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6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9월 4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, 조례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의장은 시장 및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임원 채용과 파견 공무원의 복무상황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6조의2(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의 보고) ① 의장은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(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산하기관 파견 시 해당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반기별로 공무원 인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56조의2(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의 보고) ① 산하기관장은 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산하기관 파견 시 해당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공무원 인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.</p>	<p>제56조의2(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의 보고) ① 의장은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(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의장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산하기관 파견 시 해당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반기별로 공무원 인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2(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의 보고) ① 의장은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(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산하기관 파견 시 해당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반기별로 공무원 인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56조의2(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의 보고) ① 의장은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(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의장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산하기관 파견 시 해당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반기별로 공무원 인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</p>